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제12조의2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, 조사의 기준, 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1. 재산 및 소득 규모
2. 세대원 수 등 세대정보(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)
3.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
4. 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
5. 에너지이용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(이하 “간이조사”라 한다)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,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제13조의2제2호라목을 삭제한다.

제13조의3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주민등록표 등본(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[별표 3] 과태료부과기준(제18조 관련) 개별기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26조 제2항	30만원	50만원	100만원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6조 제1항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3조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 (현행 제13조와 같음)</u> <u>제13조(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</u> <u>한 실태조사 등) ① 산업통상자</u> <u>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</u> <u>본문에 따라 3년마다 「국민기</u> <u>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의2에 따</u> <u>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</u> <u>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</u> <u>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</u> <u>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</u> <u>시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</u> <u>부장관은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</u> <u>을 정하고, 조사의 기준, 내용</u> <u>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</u> <u>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</u> <u>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</u> <u>1. 재산 및 소득 규모</u> <u>2. 세대원 수 등 세대정보(「주</u> <u>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</u> <u>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</u> <u>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가</u> <u>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</u> <u>정보자료를 포함한다)</u>

제13조의2(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)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	3. <u>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 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</u> 4. <u>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</u> 5. <u>에너지이용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</u> 6. <u>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② <u>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(이하 “간이조사”라 한다)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③ <u>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,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.</u> 제13조의2(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) ----- -----
---	---

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1. (생략)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가. ~ 다. (생략)

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

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

마. (생략)

제13조의3(자료제공 요청 대상)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“가족관계증명·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(생략)

나. 주민등록표 등본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마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3(자료제공 요청 대상) -

-----.

1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주민등록표 등본(세대주

다.·라. (생략) 2. (생략)	<u>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현행				
<u>별표 3 제2호</u> (생략)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<u><신설></u>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6조 제1항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개정안				
<u>별표 3 제2호</u> (생략)				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26조 제2항	30만원	50만원	100만원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6조 제1항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